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인력	인원	자격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분석전문가	2명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학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한다.

2. 시설기준

- 가. 작업환경상담실
- 나.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 나.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다. 분진측정기
-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 마. 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바. 산소측정기
-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아. 원자흡광광도계
-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차.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 카. 현미경
- 타.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mg 이하이어야 한다)
- 파. 순수제조기
- 하. 건조기
- 거. 냉장고 및 냉동고
- 너. 드래프트 চে임버
- 더. 화학실험대
-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며.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